

의안번호	2200512
의 퇴 인	박홍배의원
회 답 일	2024. 6.19.
추 계 번호	24B090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심층평가 대상과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환경현황조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300만원, 2030년 1,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4,700만원(연평균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류 (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 신설)	105	105	147	—	—	357	71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지원(안 제52 조의2제3항 신설)	18	18	18	18	18	90	18
합계	123	123	165	18	18	447	89

주. 평가 분류를 위한 추정기법 개발 단가 및 심층평가 대상 건수 등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의2 신설(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u>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함(제1항)</u>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u>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2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u>사업자</u>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청회를 개최</u>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거나 사업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u>환경현황조사에 필요한 지원</u> 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52조의3 신설(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u>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u>할 수 있음.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1. <u>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2. <u>대상지역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지 않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4	안 제52조의2제1항 신설(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안 제52조의3제1항 신설(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류(심층평가 대상과 신속평가 대상)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2	안 제52조의2 신설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 미대상(제2항) — 현재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5조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필요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더라도 기편성된 기본경비 등의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3	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	•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지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법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류(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 신설),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지원(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²⁾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과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류(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 신설)

- 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대상 분류를 위한 추정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은 법 제2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수에 추정기법 개발 단가를 곱하여 산출
- (대상 사업의 수) 법 제2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17개 사업³⁾을 2026~2028년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2026~2027년 각 5개, 2028년 7개

-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 3. 에너지 개발사업 | 4. 항만의 건설사업 |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8. 공항의 건설사업 |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2. 산지의 개발사업 |
|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

- (추정기법 개발 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초 연구가 필요한 산업단지 등의 5개 사업⁴⁾에 관한 추정기법 개발을 위한 아래의 연구·용역을 참고하여 1개 사업당 개발 단가를 2,100만원으로 가정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환경영향 수정기법 및 평가 수준 결정 방법 개발 중심)⁵⁾, 한국환경연구원(KEI), 2022.11.~2023.11., 1억 600만원
 - 이때, 추정기법 개발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심층·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추정기법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비용은 향후 5년간 3억 5,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환경영향평가 분류를 위한 추정기법 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상 사업의 수(A, 개)	5	5	7	—	—	—
추정기법 개발 단가(B, 백만원/개)	21	21	21	—	—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105	105	147	—	—	357

주: 평가 분류를 위한 추정기법 개발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변동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나.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지원(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 환경부장관이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현황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심층평가 대상 추정 건수에 민간전문가의 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심층평가 대상 건수) 환경영향평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협의건수(153건)⁶⁾의 약 10%인 15건으로 가정(환경부 제출자료)

4) 산업단지, 도로, 도시개발, 관광단지, 폐기물

5) 환경부에서는 2023년도에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기초 연구중인 5개 사업도 정밀한 추정기법 개발을 위해 개정안에 따른 평가 분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임

6)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의 연도별 건수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환경영향평가	137	137	202	159	133	15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934	3,518	2,961	2,877	2,461	3,550

자료: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제출자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민간전문가의 수) 심층평가 대상 1건당 필요한 민간전문가는 4명으로 가정
 -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21개 분야 중 연평균 협의 건수가 가장 많은 4개 분야⁷⁾의 민간전문가가 공무원과 합동현지조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수당 단가) 민간전문가 1인당 지급 수당은 위원회 참석 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30만원⁸⁾으로 가정
 - 이때, 심층평가 대상 건수와 민간전문가의 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환경부장관이 심층평가 대상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심층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심층평가 대상 건수(A, 건)	15	15	15	15	15	—
민간전문가 수(B, 명)	4	4	4	4	4	—
수당 단가(C, 백만원/명·건)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18	18	18	18	18	90

주: 심층평가 대상 건수, 민간전문가 수 및 수당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변동 가능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작됨

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2. 환경영향평가의 21개 분야 중, 동·식물, 대기환경, 수질, 위생·공중보건 4개 분야

8)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